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3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 김주영·정태호·박수현

조 국・김성환・박홍배

한정애 • 이수진 • 송재봉

이용우 · 강득구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, 현행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. 그러나, 임산부인배우자가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,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및 제19조의 4).

#### 법률 제 호

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여성"을 "여성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어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남성"으로 한다.

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"여성"을 "여성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어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남성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19조(육아휴직) ① ---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---- 여성 근로자 또는 고용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 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유산, 조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산 등 위험이 있어 임신 중인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남성 --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 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생 략) 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-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----- 여성 근로자 또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 산, 조산 등 위험이 있어 임신 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남 니하다. 성 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